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0 선고 2020가단1481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6. 15.

판 결 선 고 2021. 8. 1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27,470,376원 및 그 중 9,830,196원에 대하여 2020. 10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2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을 27,091,9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은 원고에게 27,091,94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